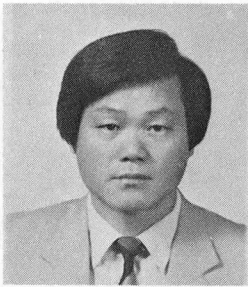


돼지고기 부위별 판매, 왜 안되나?



이 영 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

지난 9월 18일부터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 가운데 육류 소매가격을 통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첨단산업에 도전하는 선진산업속에서 유독 육류유통이 전근대적 낙후를 면치 못한 주된 원인이 소매가격의 불합리한 통제에 있음이 누차 지적되어 오던 터에 정부가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것을 만시지탄은 있으나 크게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이다.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는 업소에서 쇠고기는 부위별로 진열, 차등가격에 판매를 하고 돼지고기는 여전히 냉장고에 걸어둔채 연동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정육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혼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의 의의는 단순히 고기 값을 풀어주는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류 유통개선의 시발점으로서 점차 정육점을 전문적인 육류 종합판매장으로 발전시켜 단위 소매 이윤을 낮추고 포장육(boxed meat)유통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도체 등급제도를 원활히 정착시키며 도축에서 수송에 이르기까지 고기를 보다 위생적으로 처리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양축가의 값의 결실인 축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있다. 또한 국내 육가공제품의 주원료는 돼지고기이며, 돼지고기의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가 실현됨으로써 가격이 낮은 부위 및 품질의 육을 원료육으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육제품의 원가절감으로 국산 육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수출하는데도 원료돈 확보에서부터 도축장의 위생상태 및 수출 잔여육 처리 등이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을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도 또한 국내 유통이 정비되므로서 궁극적인 해결이 가

능해진다.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가 실현되면 소매 정육점에서는 부위별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분육 공급을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수출 잔여육을 원활히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정육점에서 부위별로 진열 판매함으로써 소매업소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축 및 수송과정의 위생상태에 관심이 높아지고 도체 등급제도가 무리없이 정착되어 수출여건이 불리할때는 국내시장에 출하해도 엉뚱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수출 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의 필요성이 쇠고기에서보다 사실상 앞서는 일이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돼지의 사육기간이 짧고 사양방법도 대부분 농후사료에 의존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규격돈 가운데 개체간 육질의 다양성이 쇠고기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부위별 차등가격을 적용하기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가 유보된 이유는 다만 그동안 이 문제를 취급해 온 부서가 농림수산부의 대가축과였다는 우연한 사실이며, 중소 가축과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주의, 다시말해 좋은 일이건 못한 일이건 앞서서 추진하다가 잘못되면 다치게 된다는 자기보호 심리에서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무리없이 정착되면 뒤따라 추진하고, 자칫 혼란의 기미가 보이면 꼬리를 감추겠다는 의도로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온 데 연유한다.

또한, 지난 85년초부터 축협과 한농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포장육에 부위별 차등가격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오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육류 부위별 판매가 아닌 쇠고기 부위별 판매라

는 개념이 굳어져 부위별 판매제도의 추진 업무를 축정과가 아닌 대가축과에서 담당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이유는 양돈업계와 육가공업계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제도의 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 업소가 갖추어야 할 냉장진열장은 쇠고기 10개 부위, 돼지고기 7개 부위를 겹치지 않게 진열할 수 있는 규격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돼지고기 부분육 식별판도 동시에 제작·배포되어 있으므로 정육업계에서는 정부의 시행방침만 떨어지면 돼지고기 부위별 판매를 언제든지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다.

또한, 현재 실시하는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는 행정고시에 따른 시범 실시에 불과하며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앞으로 관계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기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에 돼지고기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면 앞으로 최소한 2~3년 내에 관계법령을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기간동안 돼지고기는 계속해서 연동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약 행여나 다칠세라 몸을 사리고 관망하는 정부 관계자들의 처분을 기다리느라 돼지고기의 부위별 차등가격제 실시가 2~3년이나 늦어진다면 양돈업자나 유통업자 및 소비자에게 공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련업계가 뜻을 모아 정부의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제의 동시 실시를 강력히 추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다면 올해안에 돼지고기 부위별 차등가격 판매를 능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